■ DU-혁신선도학과 육성 사업 예산 집행 세부기준

- 1. 학생 활동 중 DU-혁신선도학과 육성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국내 이동이 필요할 경우 대중 교통 이용을 원칙으로 하며, 실비 정산한다.
- 2. 다만, 대중교통 이용이 여의치 않을 경우 교통비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정산한다. 가. 집행기준

순번	지원항목	목적지	지원상한액(단위:원)
1	주유비, 톨게이트비, 렌트비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교통비	서울·경기·인천·강원	100,000
2		대구	20,000
3		경북(경산·영천 제외)	40,000
4		이외 지역	70,000

※ 위 표는 '대구대학교 기업체 방문경비 지원 지침'을 준용한다.

나. 지원내용

- 1) 지원 상한액은 1인당 기준이며, 총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정산이 불가하다.
- 2) 한 프로그램에서 2곳 이상의 지역을 방문하게 될 경우 1회 산정하여 지급한다.
- 3) 정산을 위한 증빙자료 : 대구대학교 사업자번호가 찍혀 있는 현금영수증 또는 사업용 법인카드 영수증
- 4) 위와 관련 예산 집행이 필요한 경우 주관부서의 사전 승인을 얻어 집행할 수 있다.
- 5) 위 기준으로 지급이 어렵거나 특수한 상황으로 조정이 필요할 경우 별도 총장 승인을 통해 지급할 수 있다.

다. 차량대여(렌트) 기준

- 1) 대여가능 차종: 중형/소형차(소나타, 아반떼, 모닝, K5, K3, SM6, SM3, i30 등)
- 2) 대여자격: 렌트카 업체의 렌트 기준을 충족한자에 한해서 대여 가능
- 3) 차량보험 및 여행자 보험 필수 가입
- 4) 외제 차량 대여 금지(지원불가)